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3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_(안 제3조)
- 지원대상을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정함_(안 제4조)
-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를 정함_(안 제5조)
- 교육경비로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가능 등 지원방법과 제외 근거 마련_(안 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교복비에 대한 반납 근거 마련_(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강원도 전면 시행예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인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
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